울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2239 번 호

제출연월일: 2024. 2. 29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. 6.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,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

나. 근거법규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, 제34조의5(사회복지관의 설치 등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(운영의 위탁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승인 및 동의)

다. 위탁의 필요성

-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 는 기회 확대
-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자원연계 등 강점이 높음

라. 위탁 대상시설 및 기간

시 설 명	위치	시설면적	위탁기간(5년)	비고
중구 종합사회복지관	[본관] 종가3길 15 (유곡동)	3,175.62 m² (지하1,지상3층)	2024. 7. 1.~2029. 6. 30.	
	[분관] 남외로 88 (남외동)	1,647.52 m²	2024. 7. 1.~2029. 6. 30.	

12 (제262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마. 위탁사무의 범위

-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- 그 밖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바. 수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

사. 2024년도 소요예산

(단위: 천원)

시 설 명		계	국	시	구
계		916,778	-	830,140	86,638
중구종합 사회복지관	본관	672,369	-	608,916	63,453
	분관	244,409	-	221,224	23,185

3. 추진일정

-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: 3월~4월
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: 4월
- 위·수탁 협약 체결: 5월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규 ------[붙임1]
-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----- [붙임2]

붙임1 근거법규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. 제34조의5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 라 한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・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·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 - 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 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의5(사회복지관의 설치 등)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
- 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
- 3.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,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
- 4.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
-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.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2.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
 - 3.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
 - 4.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・아동 및 청소년
 - 5.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· 운영 · 사업 · 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제5조

제5조(운영의 위탁)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
- 2.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붙임2

중구종합사회복지관 현황

□ 시설개요

시 설 명	위 치	시설규모(㎡)	주 요 시 설	이용 인원
중구종합 사회복지관 (본관)	종가3길 15 (유곡동) 개관: '15.12.	3,175.62(960평) (지하1,지상3층)	 ■ 지하1층: 지하주차장, 물탱크실, 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, 통신실, 지하P/G실, 문서고 ■ 지상1층: 대강당 ■ 지상2층: 사무실, 유아실, 당구실, 조리실, 수유실, 자원봉사자실, 언어재활실, 통신실 ■ 지상3층: 소강당, 동아리실, P/G실, 직원휴게실, 미디어실, 작은도서관 	일 300명
중구종합 사회복지관 (분관)	남외로 88 (남외동) 개관: '97.11.	1,647.52(498평) (지하1,지상3층)	■ 지상1층: 경로당, 관리사무소, 무인마켓 ■ 지상2~3층: 사무실, 조리실, 행복한교실지역아동센터	일 100명

□ 세부내용

- 위탁기간: 2019. 7. 1. ~ 2024. 6. 30.(5년) ※ 최초: '98. 6.
- 수탁기관: 사회복지법인 물푸레 복지재단(대표자 : 김채규)
- 2024년 예산: 916백만원(시 830, 구 86)
- 종 사 자: 16명(관장, 부장, 과장 2, 조리사, 사회복지사 등)
- 주요업무
 - 가족복지사업(가족관계 증진사업, 가족기능 보완사업, 가족문제 해결치료 등)
 - 지역사회보호사업(급식서비스, 후원물품지원, 재가복지봉사 등)
 - 교육・문화사업(인문학강좌, 아동・청소년 기능교육 등)
 - 지역사회조직(지역조직 강화 및 교육,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, 주민복지증진사업 등)